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62호의2서식] <개정 2019. 8. 20.>

하자재발 통보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

소유자	성명(명칭)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	
	주소		
	연락처	전자우편주소	

대 상 자동차	차명	인도 날짜	년 월 일
	등록번호	등록연월일	
	차대번호	주행거리①	km

동일한 하자 수리내역	하자구분②	[ ] 중대한 하자, [ ] 일반 하자		
	1회	수리업자명	수리요청일	수리완료일
		하자내용(증상)	수리내용	
	2회	수리업자명	수리요청일	수리완료일
		하자내용(증상)	수리내용	
	3회	수리업자명	수리요청일	수리완료일
		하자내용(증상)	수리내용	
	수리 횟수가 4회 이상입니까? [ ]예(_____회), [ ]아니오			
	누적 수리기간 : 총_____일	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의3제1항 따라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(자동차제작자) 귀하

유의사항

1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의2제2항에 따라 중대한 하자의 경우 1회, 그 외의 하자의 경우 2회 수리 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하였을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하자재발통보서를 송부해야 합니다.
2. 하자재발 미통보 시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.
3. 교환·환불 요건에 해당하는 수리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(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합니다)에게 받은 수리만 해당합니다.
4. 수리 시도 횟수 산정 시 자동차제작자등이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함 시정조치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를 실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합니다. 다만, 시정조치 또는 무상수리 전 소유자가 해당 결함 또는 하자에 관한 증상으로 수리·점검을 요청하여 수리·점검한 경우는 수리 횟수에 포함됩니다.

작성방법

1. ①은 중대한 하자는 1회,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 같은 하자가 재발한 당시 주행거리를 적습니다.
2. ②는 중대한 하자, 일반 하자 구분은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7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중대한 하자,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장치는 일반 하자로 구분됩니다.
   - 중대한 하자: 원동기(동력발생장치) 및 동력전달장치, 주행장치, 조종장치, 조향장치, 제동장치, 완충장치, 연료장치, 자동차 주행과 관련된 전기·전자장치, 차대(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 차체)의 하자
   - 일반 하자: 중대한 하자 이외의 하자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